

제 호
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
귀하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신청한 옥외집회(시위·행진)는 주요 도로에서의 옥외집회(시위·행진)이므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 줄 것을 통보합니다.
<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> 1. 2.
귀하가 개최한 옥외집회(시위·행진)가 위의 조건을 위반하여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게 됩니다.
년 월 일
경찰서장(시·도경찰청장) [인]
귀하

21026-26511일

190mm×268mm

(신문용지 54g/m²)

제 호
수령증
년 월 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수령하였습니다.
년 월 일
수령인 성명 (인)